

S-Chem 안전작업 허가 및 관리 규정

제1조(목적)

본 규정은 S-Chem 제2공장 내에서 수행되는 밀폐공간 작업 및 화기작업을 포함한 고위험 작업의 안전을 확보하고, 잠재적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허가 절차 및 관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 범위)

본 규정은 S-Chem 제2공장 내에서 근무하거나 작업을 수행하는 모든 협력사 직원 및 S-Chem 임직원에게 적용한다. 또한 외주 인력, 단기 작업팀, 장비 반입업체 등 현장 출입이 허용된 모든 인원은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3조(용어의 정의)

- 밀폐공간 작업:** 산소 결핍, 유해가스 누적 등으로 인해 추가적인 안전조치가 필요한 제한된 공간 내 작업을 말한다.
- 화기작업:** 용접, 절단, 연마, 가열 장비 사용 등 화재·폭발 위험을 증가시키는 모든 작업을 의미한다.
- S등급 작업:** 인화성 물질 탱크 반경 10m 이내에서 수행하는 화기작업 등 최고 수준의 위험군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.
- TBM(툴박스 미팅):** 작업 전 위험요인 분석 및 작업자 간 안전 의사소통 강화를 위한 현장 사전 회의를 의미한다.

제4조(작업허가 신청 및 필수 첨부 서류)

- 모든 밀폐공간 작업 및 화기작업 수행 전, 작업 책임자는 사전에 작업허가서를 작성하여 안전관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작업허가서 제출 시 다음의 필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 1) **당일 촬영한 현장 사진:** 작업 위치, 위험요인, 주변 설비 등의 상태가 명확히 식별 가능해야 한다. 2) **TBM(툴박스미팅) 실시 사진:** 참여자 전원이 확인 가능하도록 촬영하며, 주요 위험요인 공유 장면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첨부 서류가 미흡할 경우, 안전관리팀은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보완 완료 전에는 허가를 승인하지 않는다.

제5조(작업 승인 절차)

- 일반 위험 작업의 승인:** 일반적인 밀폐공간 및 화기작업의 경우, 안전관리자의 허가를 득한 후 수행할 수 있다.
- S등급(최고 위험군) 작업 승인 기준:** 1) 인화성 물질 탱크 반경 10m 이내에서 수행되는 모든 화기작업은 S등급으로 분류한다. 2) S등급 작업은 안전관리자 검토 이후 반드시 **공장장 최종 승인**을 득해야 한다. 3) 공장장 승인 없이 이루어지는 S등급 작업은 절대 금지하며, 위반 시 작업 즉시 중지 및 관련자에 대한 제재가 적용된다.
- 승인 절차는 전자결재 시스템 또는 지정된 서면 양식에 따라 진행하며, 승인 전 작업 착수는 엄격히 금지된다.

제6조(작업 제한 시간)

- S-Chem 제2공장의 정규 작업 가능 시간은 06:00~22:00로 한다.
- 작업자 피로도 감소 및 사고 예방을 위해 점심시간(12:00~13:00) 동안 화기작업을 전면 금지한다.
- 화재·폭발 위험 증가 및 긴급 대응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야간시간(22:00~06:00)에는 어떠한 형태의 화기작업 도 수행할 수 없다.
- 정규 작업 시간 외 긴급 유지보수 요청 시, 안전관리자 판단하에 비화기 작업에 한하여 임시 승인할 수 있다.

5. 해당 시간대 작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화기작업은 절대 불가하며, 단순 보수·점검 등 비화기 작업만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. 작업자 피로도 감소 및 사고 예방을 위해 점심시간(12:00~13:00) 동안 화기 작업을 전면 금지한다.
6. 화재·폭발 위험 증가 및 긴급 대응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야간시간(22:00~06:00)에는 어떠한 형태의 화기작업 도 수행할 수 없다.
7. 해당 시간대 작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화기작업은 금지되며, 단순 보수·점검 등 비화기 작업만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.

제7조(밀폐공간 작업 관리)

1.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농도, 유해가스 측정 등을 포함한 위험성 평가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.
2. 필요한 경우 송기마스크, 배기팬 등 추가 안전장비를 설치하고, 감시자를 지정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수행한다.
3. 작업 중 이상 징후(산소 농도 급변, 유해가스 증가 등) 발생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작업자를 대피시켜야 한다.

제8조(화기작업 관리)

1. 작업 시작 전 인근 가연성 물질 제거, 방화포 설치, 소화기 비치 등 사전 안전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.
2. 작업 종료 후 최소 30분 동안 화재 감시를 실시하고, 잔불 여부를 확인한다.
3. 인화성 물질 취급 구역에서는 불꽃·불티 발생 가능 장비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.

제9조(안전관리자 및 감시자의 역할)

1. 안전관리자는 제출된 작업허가서를 검토하고 작업의 위험 수준에 따라 승인 여부를 판단한다.
2. 감시자는 작업 중 위험요인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며,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자 대피 및 보고 조치를 수행한다.

제10조(교육 및 훈련)

1. 모든 작업자는 밀폐공간 안전교육 및 화기작업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.
2. 신규 작업자 및 외주 인력은 작업 착수 전 사내 안전규정 기초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는다.

제11조(위반 시 조치)

1. 본 규정을 위반한 작업자는 상황에 따라 작업 중지, 현장 퇴거, 재교육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.
2.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시 협력사에는 계약상 불이익 또는 출입 제한 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.

제12조(부칙)

1. 본 규정은 공장장 승인일로부터 즉시 시행한다.
2. 관련 세부 프로세스 및 양식은 안전관리팀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.